

예산총칙

2024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54,444,986	22,633,350
일반회계	681,465,626	20,443,969
특별회계	72,979,360	2,189,381
공기업특별회계	59,130,402	1,773,912
상수도공기업	31,869,452	956,084
하수도공기업	27,260,950	817,829
기타특별회계	13,848,958	415,469
의료급여기금운영	779,313	23,379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708,642	21,259
농공지구조성사업	5,102,244	153,06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392,669	41,780
수질개선	2,006,601	60,198
주택사업	2,231,489	66,945
공공주택	1,628,000	48,84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 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 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 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885,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포함)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43,800,000 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